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0. 2. 2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사)대한의사협회 및 (사)대한병원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0273)</p>	<p>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의 주장 관철을 위하여 2000. 2. 17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제2차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 의사대회」(이하 “의사대회”라 함)와 관련하여 1999. 12. 28 임원회의실에서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12. 21 결성한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라 함)를 승인하고, 2000. 1. 8 협회강당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정부 투쟁에 따른 전권을 의쟁투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의쟁투는 2000. 1. 17부터 2. 13까지의 기간동안 수차의 회의를 통해 의사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동 결의내용을 각 시도 의사사회에 문서로 통보하고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 「헤드라인뉴스/공지」란을 통해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으며, 병원협회와 공동명의로 2000. 2. 15 자 경향신문, 대한매일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 4개 중앙일간지에 2000. 2. 17 개최되는 의사대회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휴진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또한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2000. 1. 17 개최된 의쟁투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병원협회 부회장, 감사, 이사 등 3인을 1. 20경 회장단 회의를 통해 자신을 대표하여 의쟁투중앙상임위 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이들 3인이 동 대회당일 휴업·휴진할 것을 결의한 의쟁투중앙상임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2000. 2. 11 회장단 및 감사, 이사 등 총 63인이 참석한 임시 이사회에서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인력을 제외하고 동 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다음날 전국 병원장에게 동 대회를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사실과 함께 통보하였으며,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통해서도 동 결의내용을 통보하는 등 자신들의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불문하고 단체적 행위를 하여</p>	<p>◎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4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cm의 크기로 각각 게재하여 공표토록 하고 고발 조치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개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	

2000. 3. 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SK텔레콤(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9910유거1454)	SK텔레콤주식회사는 1999. 5. 3부터 6. 27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사인 “스피드011 돈버는 가족축제”를 실시하면서 신규고객 39,046명에게 퀴즈응답방식으로 백화점상품권(10만원), 농협상품권(10만원), 주유권(10만원), 삼성전자 워고 중 1개, 신형배터리 1개 그리고 SK주유권(2만원) 등 자신이 경품고시 제8조제1항에 의해 제공가능한 경품가액에서 1,559백만원 초과하는 총 3,542백만원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7천만원

2000. 3. 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한주택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11광고1597)	대한주택공사는 자신이 건설·분양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의 「남양주 청학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동 아파트 단지로부터 약 1.2km 떨어진 위치에 ‘남양주권 광역쓰레기처리(매립) 시설’의 설치가 예정되고 「주거환경평가」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12월부터 1998. 2월경까지 제작·배포한 카탈로그 2쪽에 “...주거환경평가에서 최적인 전월요지로 평가를 받을 만큼 삶의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 청학지구...”라고 표현하여 마치 동 평가에서 동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최적인 평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0. 3. 1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9908광사1143)</p>	<p>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조합 내에 비공식 자문기구로 광주전역 레미콘사장단협의회(이하 "사장단협의회"라 함)와 그 산하에 사장단협의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함) 및 레미콘영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두고 1998. 11. 3 레미콘의 원자재인 시멘트가격이 인상되자 같은해 11. 30 소위원회를 통하여 1차로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가격을 소비자권장가격의 81%로 인상 결의한 후 이를 같은해 12. 1부터 1999. 5. 31까지 시행하고, 2차로 1999. 6. 1부터 8. 31까지 종전 소비자 권장가격의 81%에서 85%로 가격을 4% 인상결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차로 인상된 민수레미콘 단가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가 현실화에 불응한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민수레미콘 납품을 중지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준수하도록 하였고, 동광산업(주) 등 3개 구성사업자가 실무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무시하고 소비자권장가격 대비 81% 이하의 가격으로 민수레미콘을 건설현장에 납품하자 범칙금 24,295천원을 징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999. 5. 14 자신의 회의실에서 사장단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하여 자신이 계약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에 대해 전남대병원 납품 공개입찰 금지와 광주대 및 기계공구조합 발주 풍암지구현장 납품 중지를 결의한 후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사장단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없이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남대병원 및 화순농어민병원의 신축공사용 관급자재인 「레미콘 25-210-15의 4종 구매입찰」에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불참함으로써 5회에 걸쳐 실시한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고, 구성사업자인 풍산산업(주)가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1999. 5. 20 전남대병원과 민수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같은 해 6. 8 소위원회를 통하여 동 레미콘사에 대해 개별계약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10백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6. 29 동 레미콘사의 나주세무서청사 신축현장의 레미콘납품대금</p>	<p>◎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27,200천원</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민수레미콘 생산·출하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1998. 5. 7 소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구성사업자 중 금성산업(주)가 1999. 4. 4 지정된 휴무일을 준수하지 않자 동 레미콘사에 대해 휴무일 준수유무 위반을 이유로 3개 건설현장의 민수레미콘 납품대금 중 20%에 해당하는 범칙금 4,634천원을 징수하기로 결의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p>	

2000. 3. 1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주)무학 및 대선주조(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911부사1658)</p>	<p>주식회사 무학 및 대선주조주식회사는 각각 워크아웃 대상기업과 화의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경영상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종이박스형(이하 "지박스형"이라 함) 소주의 생산중단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경쟁사의 행동을 의식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결정·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1999. 2. 9 부산주류도매업협회(이하 "부산협회"라 함)가 주관한 영남·제주지역 소재 소주제조회사 대표자들과 동 지역 소재 주류도매업협회 회장들의 모임에서 부산협회 회장으로 부터 지박스형소주의 공급중단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1999. 3월 부산협회 회장이 자신들에게 재차 지박스형소주의 공급중단을 요구하여 이에 지박스형소주 공급을 중단하지는 상호 의사교환을 한 후 무학은 1999. 4. 1 지박스형소주의 생산·출고를 중단하였으며, 대선주조는 1999. 4. 2 임원회의에서 1999. 4. 7부터 공급을 중단기로 결정하여 1999. 4. 7부터 지박스형소주의 생산·출고를 중단하고 피박스형소주만을 생산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소주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부산지역과 경남지역에서 각각 발행되는 지방일간지(전판)에 4단×18.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2000. 3. 1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서울시 중구관내 7개 LP 가스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0001)	대성가스, 대안가스, 삼성가스, 세영가스, 안전가스공사, 평화가스, 한일가스는 산업자원부의 LP가스판매업소 통합시책에 호응하여 가스판매업계의 현대화 및 소비자편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1999. 6. 12 한일가스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중구소재 LP가스판매업소를 사실상 통합하여 공동판매업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판매업소의 정관에 해당하는 "중구LP가스판매협회 가정관"을 중구가스판매협회의 사업, 통합방법 및 의결권, 출자금 및 지분 산출, 이윤배당 및 지분매각 등의 내용으로 확정하여 중구지역의 LP가스 소매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7호 위반	◎ 1999. 6. 12의 합의와 동 합의에 근거하여 제정한 "중구LP가스판매협회 정관"을 파기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2000. 3. 2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SK텔레콤(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9907독점0986)	SK텔레콤주식회사는 시장지배력이 우월한 사업자로서 자신의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영업에 대한 위탁대리점 계약서 중 제24조에 대리점사업자가 자신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신사업자와 복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제29조에 규정하여 이동전화업 및 무선호출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진입을 제한하며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경쟁이 정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리점과 체결한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업 위탁대리점 계약서 제24조를 대리점사업자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함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건 (9907구사1085)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남대학교부속의료원과 수익계약하여 거래하고 있는 (주)경동사 등 5개 보험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 및 '천마의학연구재단연구기금' 명목으로 1994. 8월부터 1999. 6월까지 총 4,077백만원의 기부금을 제공받음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기와 거래하는 모든 의약품도매상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70,000천원

2000. 3. 2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매일유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12광고1692)	매일유업주식회사는 자신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이 유식 제품 '맘마밀'에 대하여 1999. 11. 23부터 11. 26까지 기간 중 국내 6개 일간지 및 여성지 12월호에 "미 쇠고기 절반 O-157 감염 가능성"이라는 '99. 11. 12자 동아일보의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광고한 바, 동 기사는 미국 농무성 소속 식품안전검사국장이 로이타통신과의 영문인터뷰 기사에서 "미국산 소 중 살아있는 소(CATTLE)의 장에서 O-157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국내언론기관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우(CATTLE)가 아닌 쇠고기(BEEF)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살아있는 소에서는 O-157 대장균이 발견될 수 있지만 쇠고기에서는 발견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보로 인정되어 이를 미국육류수출협회 한국지사측에서 자신에게 팩시밀리를 통해 송부하였고 국내 언론기관들도 오보였음을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동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마치 미국산 쇠고기의 절반이 O-157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0. 3. 2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9909단체1263)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5단 이하의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시설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한 태권도장업자는 협회와의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규정 제6조, 제11조에서 승품·승단 심사 응시자는 본회 산하 지부에 등록된 각 도장 및 학교에서 수련하는 자로서 등록단체 대표자가 추천한 자로, 그리고 미등록된 도장의 응시자가 발견될 시에는 불합격처리하도록 규정·시행하고, 도장단체등록규정 제3조에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응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서류를 구비하	◎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장단체등록규정" 제3조 제2호, "심사규정" 제6조 및 제11조제3호, "규약" 제10조제1호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여 구지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접수한다"라고 규정·시행하여 서울지역 태권도장업 시장에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또한 협회への 가입이나 탈퇴는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 제10조에서 "본회에 등록된 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본회 이사회 의결로서 확정된다"라고 규정·시행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위반</p>	<p>면으로 통지하고, 동 사실을 동대문구태권도협회, 서대문구태권도협회 및 관악구태권도협회와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및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의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건 (9909독관1367)</p>	<p>서울도시가스(주)는 1997년부터 1999년 기간동안 자사에서 소요되는 가정용 가스메타기의 구입을 위하여 계열회사인 대성계전(주)이외에 대한가스기기(주), 금호미터택(주) 등 비계열회사로부터도 견적가격을 받고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가격을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입에 있어서는 계열회사인 대성계전(주)로부터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가격보다 1.9%~10.1% 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의 전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였으며, 대구도시가스(주)는 1997. 4월부터 1999. 6월말까지 가정용 가스메타기를 구입함에 있어 대성계전(주)가 자신에게 공급하는 가격이 통상적인 구입 가격보다 1.9~10.1% 정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대성계전(주)로부터 거의 전량을 구매하였고, 1997년 대성계전(주)와 비계열회사인 대한정밀공업(주)로부터 가스메타기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계열회사에게만 계약이행보증금 8백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토록 하였으며, 대성계전(주)와 대한정밀공업(주)로부터 가스메타기를 구매하고 하자이행보증금을 부과함에 있어 1997년에 계열회사에게는 계약금액의 2%를 예탁하도록 하면서 비계열회사에게는 계약금액의 10%를 예탁하도록 하고, 1998년과 1999년에는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 모두 계약금의 10%를 징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비계열회사에게만 하자보증금을 부과·징수하고 계열회사에게는 이를 면제하여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내용과 담보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p>	<p>◎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각각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